

## 변상금 사전 통지서

대상자	① 성명	금호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5, 2층 (금호동2가)	④ 전화번호	02-2253-2055

⑤ 부과내용

재 산 의 표 시		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비 고 (소유자)
소 재 지	지목	지적 (㎡)				
금호2가 530-1	도로	1,390.50	1,273.70	2010. 11. 1. ~ 2012. 5. 18.	114,057,090	성동구
금호2가 759-1	도로	348.20	329.90		29,048,600	성동구
금호2가 939-1	도로	145.00	142.10		12,512,290	성동구
금호2가 1030-1	도로	155.40	130.60		11,499,690	성동구
금호2가 627-5	도로	21.20	19.00		5,158,500	서울시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5년 11월 20일까지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,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·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.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불임 1.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 
2.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

2015년 11월 일

성 동 구 청 장 (인)

금호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귀하

##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변상금 부과 통지내역				의 견
소재지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
금호2가 530-1	1,273.70	2010. 11. 1. ~ 2012. 5. 18.	114,057,090	
금호2가 759-1	329.90		29,048,600	
금호2가 939-1	142.10		12,512,290	
금호2가 1030-1	130.60		11,499,690	
금호2가 627-5	19.00		5,158,500	

그 밖의 의견 (입증서류 등 첨부)

신청인 주 소:  
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 
 생 년 월 일:  
 전 화 번 호:

년 월 일

성 동 구 청 장 귀하

[별지 제22호서식] (개정 2013. 3. 14, 2014.4.10.)

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

점유 재산의 표시		분납형식	비고
소재지	점유면적(m <sup>2</sup> )		
		년 회 분납	

분할납부 신청내역

변상금 총액 (원)	회차	납부일	변상금 (원)	연부 이자 (원)	합계	비고
	1회					
	2회					
	3회					
	4회					
	5회					
	6회					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(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)..

2015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 주 소:  
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 
 생년월일:  
 전화번호:

성 동 구 청 장 귀하